

「KB 청년도약계좌」 특약 변경 안내

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1 항에 의거 약관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변경된 약관은 KB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bstar.com > 고객센터 > 서식/약관/설명서> 예금/채권 > 약관)에서 조회 및 교부 가능합니다.

- 다 음 -

□ 대상약관: 「KB 청년도약계좌」 특약

□ 시 행 일: 2025. 07. 10.(목)

□ 기존고객 적용 여부: 적용

□ 변경내용: 제 2 조 가입대상, 제 5 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, 제 7 조 우대이율, 제 8 조 세율의 적용, 제 11 조 정부기여금의 산정, 제 13 조 부분인출, 제 14 조 기타

현 행	변 경
<p>제 1 조 (생략)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(병적증명서 (추가)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) 이하인 사람</p> <p>2.~4. (생략)</p> <p>②~⑥ (생략)</p> <p>제 3 조~제 4 조 (생략)</p> <p>제 5 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 신청 시 선택한 기간(일시납입기간) 동안 이 적금에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</p> <p>⑤~⑥ (생략)</p> <p>제 6 조 (생략)</p>	<p>제 1 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1. 가입일 현재 (삭제) 19세 이상 (삭제) 34세 (병적증명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) 이하인 사람</p> <p>2.~4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~⑥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 3 조~제 4 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 5 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</p> <p>①~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제 2 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 신청 시 선택한 기간(일시납입으로 선납한 기간) 동안 이 적금에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⑤~⑥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 6 조 (현행과 동일)</p>

제 7 조 우대이율

(생략)

항목	제공 조건
급여이체	(생략)
자동납부	(생략) ① (생략) ② 청년도약 LTE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^{주10)}
거래감사	(생략)
소득플러스	(생략)

(생략)

주10) 본인 명의로 **KB Liiv M 「청년도약 LTE** 요금제 개통 후 요금제 해지일까지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발생한 경우 (단, 1개월 이상 요금제 정지시, 정지기간 중 출금건은 자동이체로 인정하지 않음)

(생략)

제8조 세율의 적용

- ① (생략)
- ② (생략)
 1. (생략)
 2.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(제 9 조에 **따른 특별중도해지** 제외)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
 3. (생략)
- ③ (생략)

제 9 조~제 10 조 (생략)

제 11 조 정부기여금의 산정

- ① 제 10 조 제 2 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 시점 **및**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(총 5 회)에 따라 결정되며, (이하 생략)
- ② 제 1 항의 개인소득 확인은 **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 기준을** 준용하며, 해당 확인결과에 따라 제 10 조 제 2 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.
- ③ (생략)

제 7 조 우대이율

(현행과 동일)

항목	제공 조건
급여이체	(현행과 동일)
자동납부	(현행과 동일) ① (현행과 동일) ② KB리브모바일 청년도약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^{주10)}
거래감사	(현행과 동일)
소득플러스	(현행과 동일)

(현행과 동일)

주10) 본인 명의로 **KB 리브모바일 청년도약** 요금제 개통 후 요금제 해지일까지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발생한 경우 (단, 1개월 이상 요금제 정지시, 정지기간 중 출금건은 자동이체로 인정하지 않음)

(현행과 동일)

제8조 세율의 적용

- ① (현행과 동일)
- ② (현행과 동일)
 1. (현행과 동일)
 2.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(제 9 조에 **따라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와 가입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** 제외)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
 3. (현행과 동일)
- ③ (현행과 동일)

제 9 조~제 10 조 (현행과 동일)

제 11 조 정부기여금의 산정

- ① 제 10 조 제 2 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 시점 **또는**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(총 5 회)에 따라 결정되며, (이하 동일)
- ② 제 1 항의 개인소득 확인은 **가입일 또는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확인일 현재 제 2 조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개인소득 기준을** 준용하며, 해당 확인결과에 따라 제 10 조제 2 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.
- ③ (현행과 동일)

제 12 조 (생략)

(신설)

제 13 조 기타

- ① 이 적금은 일부해지(추가)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,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.
- ② 계약기간 동안 추심,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 10 조 (추가)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③ (생략)
- ④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 10 조 (추가)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, 지급액,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부 칙 (생략)

(추가)

제 12 조 (현행과 동일)

제13조 부분인출

- ① 이 적금은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해 부분인출일 전전월 말일까지 입금된 금액의 40% 이내에서 매월 납입한 금액 단위로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.
- ② 부분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하는 때에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고, 그 이자율은 제 6 조제 3 항에 따른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③ 이 적금의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인출이 불가합니다.
- ④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 하는 때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⑤ 부분인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한 정부기여금의 60%를 이 적금을 해지하는 때에 지급합니다.

제 14 조 기타

- ① 이 적금은 일부해지(제 13 조에 따른 부분인출은 제외한다)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,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.
- ② 계약기간 동안 추심,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 10 조 및 13 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③ (현행과 동일)
- ④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 10 조 및 제 13 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, 지급액,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부 칙 (현행과 동일)

부 칙

	<p><u>이 약관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며, 변경된 약관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.</u></p>
--	--

※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4 항에 의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1 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KB 국민은행 고객센터(☎1588-99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KB 국민은행